

※ 첨부 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규제 국가별 상세내용

표1. EU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목록 및 면제항목

No	물질명	CAS No	면제항목
1	Tetrabromodiphenyl ether	40088-47-9	1. 물질 內 각 물질의 농도를 10mg/kg (0.001%) 이하로 허용함.
2	Pentabromodiphenyl ether	32534-81-9	2. 혼합물 혹은 제품 內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총 합의 농도를 500 mg/kg 이하로 허용함. (2021년 7월 16일까지 재검토 예정)
3	Hexabromodiphenyl ether	36483-60-0	3.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 각 물질의 제조 및 시장출시 사용을 허용함. -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 법규 2011/65/EC (RoHS)에 규정하는 경우
4	Heptabromodiphenyl ether	68928-80-3	4. 2010년 8월 25일 이전 EU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물질을 함유하는 경우는 허용함. 단 제품에 관련된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5	Decabromdiphenyl ether (Deca-BDE)	1163-19-5	1. 물질 內 각 물질의 농도를 10mg/kg(0.001%) 이하로 허용함. 2. 혼합물 혹은 제품 內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총 합의 농도를 500 mg/kg 이하로 허용함. (2021년 7월 16일까지 재검토 예정) 3.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의 Deca BDE의 제조 및 시장출시 사용을 허용함. (회원국은 협약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a) 항공기 제조의 경우, 2019년 3월 2일 이전 형식승인을 신청하여 2022년 12월 18일까지 형식승인을 받거나 혹은 2027년 3월 2일까지 지속성 유지를 인정받은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Spare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i) 2019년 3월 2일 이전 형식승인을 신청하여 2022년 12월 18일까지 형식승인을 받거나 혹은 2027년 3월 2일까지 지속성 유지를 인정 받은 항공기의 경우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ii) 자동차의 경우(2007/46/EC 에서 정의하는 Motor Vehicle), 2019년 7월 15일 이전에 생산하거나 혹은 해당 자동차의 서비스 시점이 만료 되는 시점과 2036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c)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 법규 2011/65/EC (RoHS)에 규정하는 경우 4. 상기 3(b)(ii) 자동차 Spare 부품의 Deca BDE 사용과 제조에 대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a) 파워트레인 및 언더후드(under-hood) 용도 (예 : battery mass wires, battery interconnection wires, mobile air condition (MAC) pipes, powertrains, exhaust manifold bushings, under- hood insulation, wiring and harness under-hood(engine wiring, etc.), speed sensors, hoses, fan modules and knock sensors) (b) 연료 시스템 용도 (예 : 연료 후스, 연료탱크, 연료탱크 언더바디) (c) 불꽃장치 및 불꽃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용도 (예 : 에어백(전방/측면) 및 에어백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에어백 점화 케이블, 시트커버/직물) 5. 2019년 7월 15일 이전 Union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Deca BDE를 함유하는 경우는 허용 함. 단 제품에 관련된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6.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Union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Deca BDE이 사용되는 경우, 라벨링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7. 상기 2번 면제조건에 목적으로 수입한 Deca BDE를 함유한 제품 사용 및 시장 출시의 경우, 면제 유효기간이 적용됨. 상기 2번에 해당하는 면제조건에 의거해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6번을 준수해야 함. 관련 면제조건 종료일까지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 사용을 지속할 수 있음. 8. 항공 (aircraft)와 관련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의미함. a) 민간 항공기 b) 군용 항공기
6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PFOS)	1763-23-1 2795-39-3 29457-72-5 29081-56-9 70225-14-8 56773-42-3 251099-16-8 4151-50-2 31506-32-8 1691-99-2 24448-09-7 307-35-7	1. 물질 혹은 혼합물 內 해당물질의 농도를 10mg/kg(0.001%) 이하로 허용함. 2.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 제품 혹은 그 부품 內 PFOS 농도를 0.1 % wt이하 허용함. 섬유 혹은 재료에 코팅을 한 경우, 코팅 재료 內 PFOS 함유량을 1 µg/m² 이하로 허용함. 3. 2010년 8월 25일 이전 Union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물질을 함유하는 경우는 허용함. 단 제품에 관련된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7	DDT (1,1,1-trichloro-2,2-bis (4-chlorophenyl)ethane	50-29-3	
8	Chlordane	57-74-9	
9	Hexachlorocyclohexanes, including lindane	58-89-9 319-84-6 319-85-7 608-73-1	
10	Dieldrin	60-57-1	
11	Endrin	72-20-8	
12	Heptachlor	76-44-8	
13	Endosulfan	115-29-7 959-98-8 33213-65-9	1. 2012년 7월 10일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됨. 2. 상기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14	Hexachlorobenzene	118-74-1	
15	Chlordecone	143-50-0	
16	Aldrin	309-00-2	
17	Pentachlorobenzene	608-93-5	
18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1336-36-3 and others	
19	Mirex	2385-85-5	
20	Toxaphene	8001-35-2	
21	Hexabromobiphenyl	36355-01-8	

22	Hexabromocyclododecane (HBCD)	25637-99-4, 3194-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1. 난연제 성분으로 제품, 혼합물, 혹은 물질에 존재하는 경우 2024.10.16 이후 물질, 혼합물, 제품 내 HBCDD 농도치 75 mg/kg (0.0075 wt%, 75 ppm) 초과 금지. 건물 또는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EPS 및 XPS 단열재 생산에 재활용 폴리스티렌을 사용하는 경우 HBCDD 농도치 100 mg/kg (0.01 wt%) 2. 2018년 2월 21일 이전 건축용도에 해당물질을 함유하는 발포 스티렌 수지 (스티로폼)와 2016년 6월 23일 이전부터 건축 자재에 사용된 압출 폴리스티렌 제품에 해당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함. 단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3.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Union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2016년 3월 23일 이후 해당물질을 함유한 발포 스티렌의 경우, 라벨링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23	Hexachlorobutadiene	87-68-3	1. 2012년 7월 10일 이전부터 해당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이미 사용중인 경우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됨. 2. 상기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24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87-86-5	
25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70776-03-3	1. 2012년 7월 10일 이전부터 해당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이미 사용중인 경우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됨. 2. 상기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26	Alkanes C10-C13, chloro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85535-84-8	1. 예외적으로 SCCP를 함유하는 혼합물 혹은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할 경우, 1% 이하의 농도를 준수해야 함. SCCP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0.15 % 이하의 농도를 허용함. 2. 다음의 경우에 사용을 허용함. (a) 2015년 12월 4일 이전에 이미 사용중인 SCCPs 를 포함하는 광업용 컨베이어 벨트 및 댐 실란트 (b) (a)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SCCPs를 포함하는 제품이 2012년 7월 10일이전에 이미 사용중인 경우 3. 상기 2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27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means the following: (i) perfluorooctanoic acid, including any of its branched isomers; (ii) its salts; (iii) PFOA-related compounds which,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e any substances that degrade to PFOA, including any substances (including salts and polymers) having a linear or branched perfluoroheptyl group with the moiety (C7F15)C as one of the structural elements.	335-67-1 and others	1. 4(1)조의 (b)는 PFOA 또는 그 염이 물질 내 또는 제품의 혼합물 내에 존재할때 그 함유량이 0,025 mg/kg (중량기준으로 0.0000025%) 이하에 적용된다. 2. 4(1)조의 (b)는 각각의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의 조합으로 물질 내 또는 제품의 혼합물 내에 존재할 때 그 함유량이 1 mg/kg (중량기준으로 0.001 %) 이하에 적용된다. 3. 4(1)조의 (b)는 원자 6개 이하의 탄소 체인 (carbon chain)을 가진 불소화합물의 생산에 대한 법규 18(4)(a)-(f)조에 명시된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을 만족하고, (EC) No 1907/2006 법규의 3조 15(c)의 의미 하에서 수송분리중간체(transported isolated intermediate)로서 사용되는 물질 내 존재하는 PFOA 관련 화합물이 20 mg/kg (중량기준으로 0.002 %) 이하에 적용된다. 본 유예조항은 위원회에 의해 2022년 5월 7일 전에는 재심사 및 평가되어야 한다. 4. 4(1)조의 (b)는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마이크로파우더를 함유한 산업용 및 전 문용도의 혼합물/제품에 존재하는 PFOA 및 그 염뿐만 아니라, 400 kilograys 까지의 이온화 조사(Ionizing irradiation) 및 열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PTFE 마이크로파우더에 존재하는 PFOA 및 그 염을 포함하며, 그 함량은 1mg/kg (중량기준으로 0.0001 %) 이하에 적용된다. PTFE 마이크로파우더의 생산 및 사용하는 동안 PFOA 가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The following compounds are not included as PFOA-related compounds: (i) C8F17-X, where X= F, Cl, Br; (ii) fluoropolymers that are covered by CF3[CF2]n-R', where R'=any group, n>16; (iii) perfluoroalkyl carboxylic acids (including their salts, esters, halides and anhydrides) with ≥8 perfluorinated carbons; (iv) perfluoroalkane sulfonic acids and perfluoro phosphonic acids (including their salts, esters, halides and anhydrides) with ≥9 perfluorinated carbons; (v)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PFOS), as listed in this Annex.	그렇지 못할 경우 가능한 한 감소시켜야 한다. 본 유예조항은 위원회에 의해 2022년 5월 7일 전에는 재심사 및 평가되어야 한다. 5.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PFOA 및 그 염, 그리고 PFOA 관련 화합물의 제조와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a) 반도체 제조 시의 포토공정(photolithography) 또는 에칭공정은 2025.7.4 까지 허용 (b) 필름에 적용되는 포토코팅(photographic coatings)은 2025.7.4까지 허용 (c)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액상류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진 발유 및 발수성 직물은 2023.7.4일까지 허용 (d) 침습성 및 이식형 의료기기는 2025.7.4까지 허용 (e) 다음의 생산을 위한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및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의 제조는 2023.7.4 까지 허용: (i) 고성능, 내식성 가스필터막, 물 필터막 및 의료직물용 막 (ii) 산업 폐열 교환기 장치 (iii)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PM2.5 미립자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산업용 실란트 6. 예외적으로, 이동식 및 고정식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여 시스템에 이미 설치된 액상연료증기의 억제 및 액상연료화재 (B종 화재)용 소방용 폼(foam)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PFOA 및 그 염, 그리고 PFOA 관련 화합물을 허용한다. (a) PFOA 및 그 염, 그리고(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 또는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폼은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b) PFOA 및 그 염, 그리고(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 또는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폼은 모든 방출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c) 2023.1.1 부터 PFOA 및 그 염, 그리고(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 또는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폼의 사용은 모든 방출이 포함될 수 있는 곳에서만 허용됨 (d) PFOA 및 그 염, 그리고(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 또는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폼의 보관은 5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7. 예외적으로 2026.12.31까지, 그 후 2036.12.31까지 매 4년마다 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에 따라 약품 생산목적으로 perfluorooctyl iodide 가 포함된 perfluorooctyl bromide의 사용은 허용된다. 8. 2020.7.4 이전에 연합(Union)에서 PFOA 및 그 염, 그리고(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한 제품에 관련해서는 4(2)조 3호 및 4호를 적용한다. 9. 예외적으로, PFOA 및 그 염, 그리고(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은 2020.12.3 까지 다음의 제품에 허용된다. (a) (EU) 2017/745*의 범위내에서 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b) 라텍스 프린팅 잉크 (c) 플라즈마 나노-코팅 ----- *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7 on medical devices, amending Directive 2001/83/EC, Regulation (EC) No 178/2002 and Regulation (EC) No 1223/2009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90/385/EEC and 93/42/EEC. ", "
---	--

Microsoft Word 97-2003 Document 28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and PFHxS-related compounds” means the following: (i)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including any of its isomers; (ii) its salts; (iii) PFHxS-related compounds which,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e any substance that contains the chemical moiety C6F13S- as one of its structural elements and that degrades to PFHxS.	355-46-4 and others EC No. 206-587-1 and others  List of PFHxS	1. 제4조(1)항의 (b)는 PFHxS, 그 염이 물질, 또는 제품의 혼합물 내에 존재할 때 그 함유량이 0.025mg/kg (중량기준 0.0000025%) 이하에 적용된다. 2. 제4조(1)항의 (b)는 PFHxS 관련 화합물 또는 제품에 존재하는 PFHxS 관련 모든 혼합물의 농도가 1mg/kg (중량기준 0.0001%) 이하에 적용 된다. 3. 제4조(1)항 (b)는 소방용 폼 혼합물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농축되어 사용된 소방용 폼 혼합물에 존재하는 PFHxS, 그 염 및 PFHxS관련 화합물의 농도가 0.1mg/kg (중량기준 0.00001%) 이하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 면제 조항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함[...PO: 본 개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짜를 기입]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 amending Annex I to Regulation (EU) 2019/10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listing of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and PFHxS-related compounds In Part A of Annex I to Regulation (EU) 2019/1021, the following entry is added / Brussels, 30.5.2023 C(2023) 3387 final.
29	Methoxychlor “Methoxychlor” refers to any possible isomer of dimethoxydiphenyltrichloroethane or any combination thereof.	72-43-5 30667-99-3 76733-77-2 255065-25-9 255065-26-0 59424-81-6 1348358-72-4 and others	1.2024.10.16 이후 물질, 혼합물, 제품 내 Methoxychlor 농도치 0.01 mg/kg (0.000001 wt%, 0.01 ppm) 초과 금지

표 개체삽입. 국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금지 목록

물질LIST

특정면제

- 고유번호 : 스톡홀름협약 등재연도-연번
- 부속서 등재정보 : A(금지물질), B(제한물질), C(비의도적 생산 물질)로 부속서 A ~ B에 등재된 물질은 스톡홀름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로는 생산·사용·수출입 등 취급을 금지·제한하며 부속서 C에 등재된 물질은 배출원·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 조치를 취함

표2. EU外 국가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금지 목록

No	물질명	CAS No.	중국	인도	터키 ^{주2)}
1	Aldrin	309-00-2	○	○	○
2	Chlordane	57-74-9	-	○	○
3	Dieldrin	60-57-1	○	○	○
4	Endrin	72-20-8	○	○	○
5	Heptachlor	76-44-8	○	○	○
6	Hexachlorobenzene	118-74-1	○	○	○
7	Mirex	2385-85-5	○	○	○

8	Toxaphene	8001-35-2	○	○	○
9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336-36-3	○	○	-
10	DDT	50-29-3	○	○	○
11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110-00-9	○	○	-
12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	-	○	-
13	Alpha hexachlorocyclohexane	319-84-6	○	○	○
14	Beta hexachlorocyclohexane	319-85-7	○	○	○
15	BHC (mixture of hexachlorocyclohexanes)	608-73-1	-	-	○
16	Chlordecone	143-50-0	○	○	○
17	Hexabromobiphenyl	36355-01-8	○	○	○
18	Hexachlorobutadiene (HCBD)	87-68-3	-	○	-
19	Hexabromocyclododecane (HBCD)	25637-99-4 3194-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	○	-
20	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octabromodiphenyl ether)	68631-49-2 207122-15-4 446255-22-7 207122-16-5	○	○	-
21	Lindane	58-89-9	○ ^{주1)}	○	○
22	Pentachlorobenzene	608-93-5	○	○	○
23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PCP)	87-86-5 131-52-2 27735-64-4 3772-94-9 1825-21-4	-	-	○
24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its salts and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	1763-23-1	○ ^{주1)}	-	-
25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	70706-03-3	-	-	-
26	Alkanes C10-C13, chloro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85535-84-8	-	○	-
27	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s	115-29-7 959-98-8 33213-65-9	○ ^{주1)}	○	○
28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commercial Pentabromodiphenyl ether)	40088-47-9 32534-81-9	○	○	-
29	Dicofol	115-32-2 10606-49-9	-	-	○
30	Decabromodiphenyl ether	1163-19-5	-	-	-
31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7439-97-6	-	-	-
32	Perfluorooctanoic acid (PFOA) and its salt, PFOA-related compounds	335-67-1 and others	-	-	-

주 1) 특수 면제 또는 허용 가능 용도 외 금지

주 2) 터키의 경우 금지물질만 표 2에 표시, 제한물질은 표 3에 별도 기재

표3. 터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제한 목록

No	물질명	CAS No	비고
1	Tetrabromodiphenyl ether	40088-47-9 and others	1. 제6조제1항(b)은 물질 내 Tetrabromodiphenyl ether의 농도가 10 mg/kg(0.001% 중량비)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2. 혼합물이나 제품에서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의 농도가 총 500mg/kg 이하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b)호가 적용된다. 3. 예외로 아래의 경우 생산, 사용,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a) WEEE(전기전자부품 폐기물 처리지침) 에 게시된 전기/전자장비(공보 28300 호 2012년 5월 22일자) 4.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Tetrabromodiphenyl ether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제6조제2항의 제3항이 적용된다.
2	Pentabromodiphenyl ether	32534-81-9 and others	1. 제6조제1항(b)은 Pentabromodiphenyl ether의 농도가 물질 내 10 mg / kg(0.001% 중량)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2. 혼합물이나 제품에서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의 농도가 총 500mg/kg 이하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b)호가 적용된다. 3. 예외로 아래의 경우 생산, 사용,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a) WEEE(전기전자부품 폐기물 처리지침) 에 게시된 전기/전자장비(공보 28300 호 2012년 5월 22일자) 4.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Pentabromodiphenyl ether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제6조제2항의 제3항이 적용된다.
3	Hexabromodiphenyl ether	36483-60-0 and others	1. 제6조제1항(b)은 Hexabromodiphenyl ether의 농도가 물질 내 10 mg / kg(0.001% 중량)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2. 혼합물이나 제품에서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의 농도가 총 500mg/kg 이하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b)호가 적용된다. 3. 예외로 아래의 경우 생산, 사용,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a) WEEE(전기전자부품 폐기물 처리지침) 에 게시된 전기/전자장비(공보 28300 호 2012년 5월 22일자) 4.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Hexabromodiphenyl ether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제6조제2항의 제3항이 적용된다.
4	Heptabromodiphenyl ether	68928-80-3 and others	1. Heptabromodiphenyl ether 농도가 10 mg / kg (0.001% 중량) 이하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b)에 따른다. 2. 혼합물이나 제품에서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의 농도가 총 500mg/kg 이하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b)호가 적용된다. 3. 예외로 아래의 경우 생산, 사용,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a) WEEE(전기전자부품 폐기물 처리지침) 에 게시된 전기/전자장비(공보 28300 호 2012년 5월 22일자) 4.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Heptabromodiphenyl ether 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제6조제2항의 제3항이 적용된다.
5	Decabromodiphenylether	1163-19-5	1. 물질 중에 decabromodiphenyl ether의 함유율이 10 mg / kg (0.001 중량%)이하일 경우, Article 6 (1) (b)가 적용된다.

			2.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tetra-, penta-, hexa-, hepta-, decaBDE의 함유량의 합이 500 mg / kg 이하인 경우, Article 6 (1) (b)가 적용된다. 3.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생산, 시장 출시, 사용이 허용된다. (a) 2019년 3월 2일 이전에 형식승인이 적용된 항공기가 2022년 12월전에 수령된 경우에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허용된다. (b) 다음의 경우 spare parts의 생산은 2027년 3월 2일까지 허용된다; i) 2019년 3월 2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고 2022년 12월전에 생산된 항공기, 또는 2023년 12월 18일 이전에 항공기의 계속적인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승인된다면, 항공기의 서비스수명이 2027년 3월 2일 이전에 완료될때까지이다. ii) Regulation on the Type Approval and Market Surveillance and Inspection of Motor Vehicles and Trailers and Their Parts, Systems and Separate Technical Units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dated 19/04/2020 and numbered 31104 의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서비스 수명, 또는 2036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c) Regulation on the Control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dated 22/05/2012 and numbered 28300 의 범위내에 있는 전기전자장치 4. 다음의 한개 이상의 시스템에서 상업적인 Deca-BDEs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하여 3 (b) (ii) 항에 명시된 예외조건은 자동차의 Spare parts에 적용된다. (a) 파워트레인 및 언더후드시스템(배터리 케이블, 배터리 연결 케이블, 이동식 에어컨 파이프 (MAC), 파워트레인, 연소파이프 부싱, 언더후드 인슐레이션, 언더후드 와이어링 및 파워라인 (엔진 파워라인 등), 스피드 센서, 호스, 팬부품 및 녹센서 등) (b) 연료 시스템 (연료호스, 연료탱크 및 차량하부 연료탱크 등) (c) 불꽃 재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불꽃 재료 및 시스템 (예 : 에어백 개시 케이블, 시트 커버/패브릭 (에어백만 관련된 경우) 및 에어백 (전면 및 측면) 5. 본 법규의 발효일 이전에 사용중인 decabromodiphenyl ether를 포함하는 제품의 사용은 허용된다. Article 6 (2) 의 3번째 문장은 이러한 제품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6.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규정)과는 별개로, decaBDE 가 사용된 아이템은 부착된 라벨로 수명주기 동안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7. 세번째 문단에서 규정된 예외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입된 decaBDE를 포함하는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규정된 예외시점까지 허용된다. 6번째 문단은 3번째 문단에서의 예외조항에 따라 제조된 제품에 적용한다. 예외시점 전에 사용된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8. 본 항목의 목적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대해 (a) 항공기 및 관련 제품, 부품 및 장치 감항성과 환경인증법규(Aircraft and Related Product, Part and Device Airworthiness and Environmental Certification Regulatio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dated 20/08/2013 and numbered 28741)에 따라 발급된 형식 인증서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회원국 중 하나의 자국법에 따라 발급된 형식 인증서. ICAO 디자인 승인에 따라 제조된 민간 항공기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정 Annex-8에 따라 ICAO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감항성 증명서에 따라 제조된 민간 항공기 (b) 군사 항공기
6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PFOS)	1763-23-1 2795-39-3 29457-72-5 29081-56-9 70225-14-8 56773-42-3 251099-16-8 4151-50-2	1. 제 6조(1) (b)는 물질 또는 혼합물내에서 PFOS의 양이 10 mg / kg (0.001% 중량%) 이하의 농도에 적용된다. 2. PFOS를 포함하는 다른 부분의 구조적 및 미세 구조적 부분의 중량을 참조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중량 기준으로 0.1% 이하의 PFOS를 함유하는 반제품, 제품 또는 그 제품의 부분품 또는 직물 또는 기타 코팅된 재료에서 PFOS의 양은 1µg/m² 미만의 농도이며 제6 조 (1) (b)가 적용된다. 3. 본 규제의 발효일 이전에 사용중인 PFOS를 포함하는 제품은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제

		31506-32-8 1691-99-2 24448-09-7 and others	품과 관련하여 제 6조 2항의 세번째 문단이 적용된다. 4. 환경에 유출되는 양이 최소화 된다면, 폐쇄시스템에서 분말 억제제 또는 비장식용 경질크롬(VI) 페인트의 생산에 사용되는 PFOS의 생산 및 시장출시는 2025년 9월 7일까지 허용된다. 5. 1항과 2항의 물질, 혼합물, 제품의 만족여부는 TS 15968 표준의 "PFOS Determination" 에 관한 분석시험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TS 표준에 준한다고 입증된 모든 분석법이 사용될 수 있다.
7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1336-36-3 and others	1. 폴리염화바이페닐 및 테트라페닐 규제(Regulation on Control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and Polychlorinated Terphenyls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dated 27/12/2007 and numbered 26739)의 조항과 관련없이 본 규제의 발효일에 사용중인 제품은 그 사용이 허용된다.
8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Hexabromocyclododecane " means: hexabromocyclododecane, 1,2,5,6,9,10-hexabromocyclododecane and its main diastereoisomers: alphahexabromocyclododecane betahexabromocyclododecane gammahexabromocyclododecane	25637-99-4 3194-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1. Hexabromocyclododecane은 제6조 (1) (b)에 따라 물질, 혼합물, 제품 또는 제품의 난연성분이 100 mg / kg (중량기준 0.01%) 이하의 농도일 경우에 적용된다. 2. 기존 건물에 사용중인 Hexabromocyclododecane을 포함하고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 및 압축 폴리스티렌 제품은 사용이 허용되며, 제6조 2항의 세번째 문장이 이러한 제품에 관하여 적용된다.
9	Hexachlorobutadiene	87-68-3	1. 본 규제 발효일 이전에 사용된 Hexachlorobutadine을 포함하는 제품의 시장출시 및 사용은 허용되며 제 6조 2항은 이러한 제품에 적용된다.
10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means chemical compounds based on the naphthalene ring system, where one or more hydrogen atoms have been replaced by chlorine atoms.)	70776-03-3 and others	1. 본 법규의 발효일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시장에 출시되어 계속 사용중인 제품이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며 이러한 제품들에는 제6조 2항의 세번째 문장이 적용된다.
11	Alkanes C10-C13, chloro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85535-84-8 and others	1. 예외적으로, 중량 기준으로 1% 미만의 SCCP 물질 또는 SCCP를 포함하는 혼합물이거나 중량 기준 0.15% 미만의 농도로 SCCP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 시장출시 및 사용은 허용된다. 2. 다음의 사용은 허용된다. (a) 규제 발행일 또는 그 이전에 광산분야에서 사용중인 SCCP를 포함하는 컨베이어벨트 및 댐실링 재료로 사용 (b)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중인 (a) 에 명시된 것 이외의 SCCP를 포함하는 제품 3. 제 6조 2항의 3번째 문단은 2항에서 규정한 상품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12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 related compoun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335-67-1 and others	1. PFOA 또는 PFOA 염이 0.025 mg / kg (중량기준 0.000025w%) 이하의 농도로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사용된 경우 제6조 (1)(b) 가 적용된다. 2. PFOA와 관련된 화합물 또는 이러한 화합물의 조합이 (중량기준 0.0001%wt) of 1 mg / kg 이하의 농도로 물질, 혼합물, 제품에 존재할 경우, 제 6조 (1)(b) 가 적용된다. 3.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이러한 화합물의 조합이 6개 이하의 탄소사슬을 가진 불소화합물의

compounds associated with PFOA have the following meanings: (i) perfluorooctanoic acid containing all its branched isomers (ii) its salts (iii) For the purposes of any convention, compounds associated with PFOA, containing (C7F15) C as the structural element substances with a linear or branched group of perfluorooctanoic acids that degrade to PFOA, including their salts and polymers The following compounds are not considered to be associated with PFOA: (i) C8F17-X, X is F, Cl, Br; (ii) Fluoropolymers containing CF3 [CF2] n-R '	생산에 사용되는 휴대용 중간물질에 사용되는 20mg/kg(0.002%) 이하일 경우 2017.7.23 일자 관보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 제한규정 제4조 제(ii)1항에 규정한 기준은 30105번 규제이며, 같은 규정 제18조 제(a)호부터 (e)호까지에 규정한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요건을 충족시키다 4. 이온화 방사선 방출(ionizing radiation emission) 또는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최대 400 킬로그램의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미세분말(microdusters)에 포함된1 mg / kg (중량기준 0.0001w%)의 PFOA 또는 PFOA 염. 전문적이고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PTFE 미세분말을 포함하는 혼합물 및 제품에 포함된1 mg / kg (0.0001w%)의 PFOA 또는 PFOA 염 5. 예외적으로, PFOA, PFOA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생산, 시장출시 및 사용은 다음 조건에서 특정일까지 허용된다: (a)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포토 리소그래피 또는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2025년 7월 4일까지 (b) 필름에 적용되는 포토그래픽 코팅은 2025년 7월 4일까지 (c)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오 또는 방수 섬유소재는 2023년 7월 4일까지 (d) 침습성 또는 이식형 의료용품은 2023년 7월 4일까지, (e) 다음의 제조를 위한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및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의 생산은 2023년 7월 4일까지 (i) 의료용 직물에 사용되는 고성능, 내식성 가스필터막, 수분필터막 및 막 (ii) 산업용 폐기물 열교환장치 6. 예외적으로 휴대용 및 고정식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미 설치된 시스템에서 액체 연료 증기 및 액체 연료 화재 (Class B 화재)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소방용 품에 PFOA, PFOA 염 및 /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상황이 고려 될 때 2025 년 7 월까지 (a) PFOA, 그 염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소방용 품은 훈련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b) PFOA, 그 염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 할 수 있는 소방용 품은 모든 방출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시험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c) 2023년 1월 1일부터 PFOA, 그 염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품의 사용은 모든 방출이 포함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d) PFOA, 그 염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소방용 품 비축물은 7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7. 예외적으로, 제약 제품의 제조를 위해 perfluorooctyl iodide가 포함된 perfluorooctylbromide는 사용 가능하다. 8. 본 규제의 발효일 이전에 사용중인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사용은 허용된다. 제 6조 2항의 세번째 문단은 앞서 언급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9. 예외적으로, 다음의 용도로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사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a) 의료기기법(Medical Device Regulatio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No. 27957 dated 07/06/2011)의 적용을 받는 임플란트 이외의 의료 기기 (b) 라텍스 프린팅 잉크 (c) 플라즈마 나노코팅
--	--

* 1~ 5번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의 경우, 혼합물 및 제품 內 총합이 500 mg/kg 초과 사용금지.

* 5번 deca BDE 의 경우, 일부 생산중인 Service Part에 대해서는 용도별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세 내용확인 필요함.

* 8번 HBCD 의 경우, 물질, 용액, 제품 內 난연제 용도로서 0.01 wt% 초과 사용금지.

* 11번 SCCP 의 경우, 제품 內 0.15 wt% 초과 사용금지.

* 12번 PFOA 의 경우, 물질, 혼합물, 제품 內 0.025 mg/kg (0.0000025 wt %) 초과 금지,
PFOA 화합물의 경우, 1 mg/kg (0.0001 wt %) 사용금지.

표4_1. 베트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목록 용도 및 최대 허용 한도

No	물질명	CAS No	용도	최대 허용한도
1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PBDE)	-	산업 부문의 원자재, 재료, 완제품 및 제품 1.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인조 가죽, 고분자 절연체 및 전자부품 2. 자동차 내장재(자동차 부품, 시트, 대시보드 금형 및 폼보드) 3. 폴리머 절연체의 실내 장식 재료, 가구 코팅 및 발포 부품 4. 완충재, 보호복, 카페트, 커튼, 실내 장식품 및 텐트 5. 필터, 단열판, 단열재, 파이프 용 플라스틱 단열재 및 경질 폴리우레탄 폼 6. 포장용 폴리우레탄 폼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10mg/kg (0.001wt%)
	Tetrabromodiphenyl ether (C12H6Br4O)	40088-47-9		
	Pentabromodiphenyl ether (C12H5Br5O)	32534-81-9		
2	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HBDE) *	-	산업 부문의 원자재, 재료, 완제품 및 제품: 1. 난연제 원료 2. 운송수단(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단열재로 이루어진 부품 및 좌석/쿠션 운송시설의 폴리우레탄 폼) 3. 고분자, 특히 ABS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플라스틱의 성분 또는 첨가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10mg/kg (0.001wt%)
	Hexabromodiphenyl ether (C12H4Br6O)	36483-60-0, 446255-03-4		
	Hexabromodiphenyl ether (C12H4Br6O)	68928-80-3, 446255-20-5		
3	Decabromodiphenyl ether (DBDE)	1163-19-5	산업 부문의 원자재, 재료, 완제품 및 제품: 1. 난연제 원료: 플라스틱, 폴리머, 복합 재료, 섬유, 접착제 및 코팅 재료 2. 컴퓨터 및 텔레비전, 전선 및 케이블, 비금속 파이프의 경우 플라스틱 절연 재료 3. 가전제품(히터, 다리미, 팬 및 코일이 있는 온수기), 전기전자 제품(컴퓨터 및 텔레비전, 전선 및 케이블, 파이프 및 카페트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첨가제) 4. 건축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5. 자동차 부품(절연체, 전선, 내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10mg/kg (0.001wt%)

			장재)	
4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and its salts, and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 (C8F17SO2X)	1763-23-1, 2795-39-3, 29457-72-5, 29081-56-9, 70225-14-8, 56773-42-3, 251099-16-8, 4151-50-2, 31506-32-8, 1691-99-2, 24448-09-7, 307-35-7	산업, 농업 및 의료 분야의 원자재, 재료, 완제품 및 제품: 1. 흰개미 및 볼개미용 살충제 2. Atta 및 Acromyrmex 속의 개미용 독 미끼 3. PFOS를 포함하는 첨가제 4. 소방용 폼 5. 항공 작동유 6. 도금(경도금) 7. 코팅재 8. 섬유 9. 가죽과 카펫 10. 고무 및 플라스틱 11. 코팅 12. 인쇄 잉크 13. 가전제품 : 사무용 전자기기 및 부품, 반도체 및 사진 14. 식품의 용기 및 종이 포장	1.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10mg/kg (0.001wt%) 2. 반제품, 원자재, 재료, 제품 또는 상품의 경우 0.1wt% 3. 섬유 제품, 코팅 재료 또는 그 원료의 경우 < 1 µg/m ²
5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25637-99-4, 3194-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산업 부문의 원자재, 재료, 제품 및 상품: 1. 발포 및 단열재(폴리스티렌 - EPS 및 XPS) 및 건축 또는 건물에 사용되는 단열 보드 2. 전기전자기기의 플라스틱 절연 재료	물질 또는 혼합물 또는 화합물, 원료, 재료, 완제품 또는 제품의 경우 100 mg/kg (0.01wt%)
6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85535-84-8, 68920-70-7, 71011-12-6, 85536-22-7, 85681-73-8, 108171-26-2	산업 부문의 원자재, 재료, 완제품 및 제품: 1. 합판, 산업용 합판, 고무, 잉크, 코팅 및 접착제의 첨가제 2. 가죽 무두질용 표면처리제 3.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윤활유 또는 절삭유의 첨가제 4. 내화도료 및 방수도료의 구성 성분 5. 야외 조명 장식용 튜브 6. 폴리염화비닐용 2차 가소제 (단, 장난감이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1.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 1wt% 2. 원료, 재료, 완제품 또는 제품의 경우 중량의 < 0.15%

7	Perfluorooctanoic acid (PFOA) and its salts, and PFOA derivatives	335-67-1 포함 829개 물질  GADSL PFOA .xlsx	산업 부문의 원자재, 재료, 완제품 및 제품: 1. 소방용 거품 2. 섬유, 고전압 케이블 및 사진의 내화성, 내유성, 내오염성 및 방수성 재료 3. 식품의 용기 및 종이포장 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 또는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VDF) 함유 물질 5. 폴리플루오로에틸렌프로필렌 (FEP) 함유 물질 6. O-링, 벨트 및 플라스틱 자동차 내장 액세서리에 사용되는 불소탄성체를 포함하는 재료 7. 임베디드 의료기기 8. 의약품	1. PFOA 및 그 염: 물질 또는 혼합물 또는 원자재, 재료, 제품 또는 상품에서 $\leq 0.025\text{mg/kg}$ (0.0000025wt%) 2. PFOA 유도체: 물질 또는 혼합물 또는 원료, 재료, 제품 또는 상품의 경우 $\leq 1\text{mg/kg}$ (0.0001wt%) 3. 첨가제 또는 중간체로 사용되는 PFOA 유도체: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leq 20\text{mg/kg}$ (0.002wt%)
---	---	--	--	--

* 상기 용도에 대한 최대 허용 한도 이내로 사용 가능

* 헥사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HBDE), 테트라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PBDE),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BDE) 중 1종 이상을 함유하는 경우 이들의 총 농도는 500mg/kg을 초과 불가

표4_2. 베트남 수입금지 POP 5종

No.	물질명	CAS No.	GADSL #
1	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68631-49-2 and others	216 (PBDE group)
2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5436-43-1 and others	216 (PBDE group)
3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3194-55-6 and others	70 (HBCD group)
4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	70776-03-3 and others	219 (PCN group)
5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and PFHxS-related compounds	355-46-4 and others	185 & 186 (PFHxS group)

표4_3. 베트남 면제등록에 따른 수입 허용 POP 4종

No.	물질명	CAS No.	GADSL #
1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s, their salts (PFOS) and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	1763-23-1 and others	183 (PFOS group)
2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1163-19-5 and others	216 (PBDE group)
3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	85535-84-8 and others	60 (SCCP & MCCP group)
4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	335-67-1 and others	177 & 178 (PFOA group)

표5. 캐나다 PFOS규제

NO	물질명	규제내용	예외조항
1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PFOS)	하기물질中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화합물 : C8F17SO2 / C8F17SO3 / C8F17SO2N	1. 연구 목적 2. 하기 작업시에 김서림 방지 또는 연기발생 억제제로 쓰일 경우 1) 크롬 전기도금 2) 무전해 nickel-polytetrafluoroethylene도금 3)플라스틱 기판 에칭

표6. 싱가포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목록 용도 및 최대 허용 한도

No.	물질명	CAS No.	GADSL #
1	Decabromodiphenyl ether	1163-19-5 and others	216 (PBDE group)
2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	335-67-1 and others	177 & 178 (PFOA group)
3	UV-328 *	25973-55-1 and others	129
4	Dechlorane plus **	13560-89-9 and others	99 (DP group)
5	Methoxychlor	72-43-5 30667-99-3 76733-77-2 255065-25-9 255065-26-0 59424-81-6 1348358-72-4	
6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and PFHxS-related compounds	355-46-4 and others	185 & 186 (PFHxS group)
7	Hexabromocyclododecane (HBCD)	25637-99-4 and others	70 (HBCD group)
8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		
9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	85535-84-8 and others	60 (SCCP & MCCP group)
10	Dicofol	115-32-2 10606-49-9	

표7. 브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목록 용도 및 최대 허용 한도

No.	물질명	CAS No.	GADSL #
1	Aldrin	309-00-2	
2	Chlordane	57-74-9	
3	Dieldrin	60-57-1	
4	Endrin	72-20-8	
5	Heptachlor	76-44-8	
6	Hexachlorobenzene	118-74-1	119
7	Mirex	2385-85-5	98
8	Toxaphene	8001-35-2	
9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336-36-3 and others	218
10	Chlordecone	143-50-0	
11	Hexabromobiphenyl	36355-01-8	215
12	Hexachlorobutadiene (HCBD)	87-68-3	120
13	Hexabromocyclododecane (HBCD)	25637-99-4 and others	70
14	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68631-49-2 and others	216
15	Lindane	58-89-9	121
16	Pentachlorobenzene	608-93-5	167
17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PCP)	87-86-5 131-52-2 27735-64-4 3772-94-9 1825-21-4	169
18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	70706-03-3 and others	219
19	SCCP	85535-84-8 and others	60
20	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s	115-29-7 959-98-8 33213-65-9	
21	endosulfan sulfate	1031-07-8	
22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40088-47-9 and others	216
23	Dicofol	115-32-2 10606-49-9	
24	Decabromodiphenyl ether	1163-19-5	216
25	Perfluorooctanoic acid (PFOA) and its salt,	335-67-1 and others	177
26	PFOA-related compounds	376-27-2 and others	178
27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355-46-4 and others	185
28	PFHxS-related compounds	111393-39-6 and others	186
29	UV-328	25973-55-1 and others	129
30	Dechlorane plus	13560-89-9 and others	99
31	Methoxychlor	72-43-5 30667-99-3 76733-77-2 255065-25-9 255065-26-0 59424-81-6 1348358-72-4	

표8.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목록 용도 및 최대 허용 한도

No.	물질명	CAS No.	GADSL #
1	Hexabromocyclododecane (HBCD)	25637-99-4 and others	70
2	Hexachlorobutadiene (HCBD)	87-68-3	120
3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	70706-03-3 and others	219
4	Decabromodiphenyl ether	1163-19-5	216
5	SCCP	85535-84-8 and others	60
6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	335-67-1 and others	177 & 178 (PFOA group)
7	UV-328*	25973-55-1 and others	129
8	Dechlorane plus**	13560-89-9 and others	99
9	Methoxychlor	72-43-5 30667-99-3 76733-77-2 255065-25-9 255065-26-0 59424-81-6 1348358-72-4	

표9. 영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목록 용도 및 최대 허용 한도

No.	물질명	CAS No.	구체적인 면제항목
1	Tetrabromodiphenyl ether C ₁₂ H ₆ Br ₄ O	40088-47-9 and others	1. 물질 內 각 물질의 농도를 10mg/kg (0.001%) 이하로 허용함. 2. 혼합물 혹은 제품 內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총 합의 농도를 500 mg/kg 이하로 허용함. (2021년 7월 16일까지 재검토 예정) 3.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 각 물질의 제조 및 시장출시 사용을 허용함. - 전기 및 전자 장비 규정 2012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규정하는 경우 4. 2010년 8월 25일 이전 Union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물질을 함유하는 경우는 허용함. 단 제품에 관련된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2	Pentabromodiphenyl ether C ₁₂ H ₅ Br ₅ O	32534-81-9 and others	
3	Hexabromodiphenyl ether C ₁₂ H ₄ Br ₆ O	36483-60-0 and others	
4	Heptabromodiphenyl ether C ₁₂ H ₃ Br ₇ O	68928-80-3 and others	

5	Decabromdiphenylether	1163-19-5	1. 물질 內 각 물질의 농도를 10mg/kg(0.001%) 이하로 허용함. 2. 혼합물 혹은 제품 內 tetra-, penta-, hexa-, hepta- and decaBDE 총 합의 농도를 500 mg/kg 이하로 허용함. (2021년 7월 16일까지 재검토 예정) 3.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의 Deca BDE의 제조 및 시장출시 사용을 허용함. (a) 항공기 제조의 경우, 2019년 3월 2일 이전 형식승인을 신청하여 2022년 12월 18일까지 형식승인을 받거나 혹은 2027년 3월 2일까지 지속성 유지를 인정받은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Spare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i) 2019년 3월 2일 이전 형식승인을 신청하여 2022년 12월 18일까지 형식승인을 받거나 혹은 2027년 3월 2일까지 지속성 유지를 인정받은 항공기의 경우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ii) 자동차의 경우(2007/46/EC 에서 정의하는 Motor Vehicle), 2019년 7월 15일 이전에 생산하거나 혹은 해당 자동차의 서비스 시점이 만료되는 시점과 2036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c)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 법규 2012에 규정하는 경우 4. 상기 3(b)(ii) 자동차 Spare 부품의 Deca BDE 사용과 제조에 대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a) 동력전달장치 및 보닛 아래 애플리케이션: 배터리 연결선, 배터리 간 연결선, 이동식 에어컨(MAC)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배기 매니폴드 부싱, 보닛 아래 단열재, 보닛 아래 배선 및 하네스(엔진 배선 등), 속도 센서, 호스, 팬 모듈, 노크 센서. (b) 연료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연료 호스, 연료 탱크, 차체 하부 연료 탱크. (c) 발화 장치 및 발화 장치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에어백 점화 케이블, 시트 커버/직물(에어백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에어백(전면 및 측면). 5. 2019년 7월 15일 이전 Union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Deca BDE를 함유하는 경우는 허용함. 단 제품에 관련된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6.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Union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Deca BDE이 사용되는 경우, 라벨링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7. 상기 3번 면제조건에 목적으로 수입한 Deca BDE를 함유한 제품 사용 및 시장 출시의 경우, 면제 유효기간이 적용됨. 상기 3번에 해당하는 면제조건에 의거해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6번을 준수해야 함. 관련 면제조건 종료일까지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 사용을 지속할 수 있음. 8. 항공 (aircraft)와 관련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의미함. a) a civil aircraft b) a military aircraft.
---	-----------------------	-----------	--

6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PFOS) C8F17SO2X (X = OH, Metal salt (O-M+), halide, amide, and other derivatives including polymers)	1763-23-1 2795-39-3 29457-72-5 29081-56-9 70225-14-8 56773-42-3 251099-16-8 4151-50-2 31506-32-8 1691-99-2 24448-09-7 307-35-7 and others	1. 물질 및 혼합물 內 PFOS 농도를 10 mg/kg(0.001 % wt)이하 허용함. 2.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 제품 혹은 그 부품 內 PFOS 농도를 0.1 % wt이하 허용함. 섬유 혹은 재료에 코팅을 한 경우, 코팅 재료 內 PFOS 함유량을 1 µg/m² 이하로 허용함. 3. 2010년 8월 25일 이전에 EU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PFOS를 포함한 제품의 사용 허용에 대한 규정 적용. Article 4(2)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항목 적용함. 4. 환경으로 방출되는 양 최소화 조건 하에, 비장식용 6가 크롬 도금에 사용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을 위한 미스트 억제제로서의 제조 및 시장 출시 허용에 대한 기한 연장. 해당 허용 기한 2025년 9월 7일까지 연장에 대한 규정. PFOS 사용 회원국이 2024년 9월 7일까지 PFOS 제거를 위한 진행 상황과 이 용도의 지속적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함. 위원회가 2025년 9월 7일까지 PFOS 사용 예외 규정의 추가 5년 연장 필요성 검토함.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EC(4) 적용 범위 내의 시설에서의 생산 또는 사용과 관련된 경우, PFOS 배출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최적 가용 기술 적용함. 최적 가용 기술은 지침 2008/1/EC의 Article 17(2), 두 번째 항목에 따라 위원회가 발표한 정보에 명시된 기술로 정함. 5.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가 표준을 채택하면, 해당 표준은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이 1항과 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 시험 방법으로 사용될 규정. CEN 표준과 동등한 성능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분석 방법은 CEN 표준의 대안으로 사용 가능함.
7	DDT (1,1,1-trichloro-2,2-bis (4-chlorophenyl)ethane	50-29-3	
8	Chlordane	57-74-9	
9	Hexachlorocyclohexanes, including lindane	58-89-9 319-84-6 319-85-7 608-73-1	
10	Dieldrin	60-57-1	
11	Endrin	72-20-8	
12	Heptachlor	76-44-8	
13	Endosulfan	115-29-7 959-98-8 33213-65-9	1. 2012년 7월 10일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을 허용함. 2. 상기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 (3) (4)을 준수함.
14	Hexachlorobenzene	118-74-1	
15	Chlordecone	143-50-0	
16	Aldrin	309-00-2	
17	Pentachlorobenzene	608-93-5	
18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1336-36-3 and others	PCB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이 규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이미 사용 중인 제품 사용 허용함. 해당기관은 0.005% 이상의 PCB를 포함하고 용량이 0.05 dm³를 초과하는 장비(예: 변압기, 커패시터 또는 액체 보관 용기를 포함한 기타 용

			기)를 식별하고 사용에서 제거해야 함. 해당 장비 제거 기한은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19	Mirex	2385-85-5	
20	Toxaphene	8001-35-2	
21	Hexabromobiphenyl	36355-01-8	
22	1 Hexabromocyclododecane 'Hexabromocyclododecane' means: hexabromocyclododecane, 1,2,5,6,9,10- hexabromocyclododecane and its main diastereoisomers: alpha- hexabromocyclododecane; beta- hexabromocyclododecane; and gamma- hexabromocyclododecane	25637-99-4, 3194- 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1. 이 항목의 목적을 위해 Article 4(1) (b)항은 물질, 혼합물, 제품 또는 난연 처리된 제품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hexabromocyclododecane 농도가 100 mg/kg(중량비 0.01%) 이하인 경우 적용함. 2. 2018년 2월 21일 이전 건축용도에 해당물질을 함유하는 발포 스티렌 수지(스티로폼)와 2016년 6월 23일 이전부터 건축 자재에 사용된 압출 폴리스티렌 제품에 해당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함. 단 조항4 (2), (3) (4)을 준수해야 함. 3.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Union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2016년 3월 23일 이후 해당물질을 함유한 발포 스티렌의 경우, 라벨링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23	Hexachlorobutadiene	87-68-3	1. 2012년 7월 10일 이전부터 해당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이미 사용중인 경우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됨. 2. 상기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24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87-86-5 and others	
25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70776-03-3 and others	1. 2012년 7월 10일 이전부터 해당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이미 사용중인 경우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함. 2. 상기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3) (4)을 준수해야 함.
26	Alkanes C10-C13, chloro (short-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85535-84-8 and others	1. 예외적으로 SCCP를 함유하는 혼합물 혹은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할 경우, 1% 이하의 농도를 준수해야 함. SCCP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0.15 % 이하의 농도를 허용함. 2. 다음의 경우에 사용을 허용함. (a) conveyor belts in the mining industry and dam sealants containing SCCPs already in use before or on 4 December 2015; (b) articles containing SCCP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oint (a) already in use before or on 10 July 2012. 3. 상기 2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항4 (2), (3) (4)을 준수해야 함.
27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compounds”means the following: (i) perfluorooctanoic acid, including any of its branched isomers; (ii) its salts; (iii) PFOA-related compounds which,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e any substances that degrade to PFOA, including any substances (including salts and	335-67-1 and others	1.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포함된 PFOA 또는 그 염의 농도가 0.025 mg/kg(중량비 0.0000025%) 이하인 경우에 적용함. 2.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포함된 개별 PFOA 관련 화합물 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의 조합 농도가 1 mg/kg(중량비 0.0001%) 이하인 경우에 적용함. 3. REACH No 1907/2006의 Article 3, 15(c)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운송되는 분리 중간체로 사용되며, 해당 규정의 Article 18(4)(a)부터 (f)에 명시된 엄격히 통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질 내에 포함된 PFOA 관련 화합물의 농도가 20 mg/kg(중량비 0.002%) 이하인 경우에 적용함. 이 조건은 6개의 원자 이하로 구성된 과불화 탄소 사슬을 가진 플루오로화합물질 생산을 목적으로 함. 이 면제 규정은

	polymers) having a linear or branched perfluoroheptyl group with the moiety (C₇F₁₅)C as one of the structural elements. The following compounds are not included as PFOA-related compounds: (i) C₈F₁₇-X, where X= F, Cl, Br; (ii) fluoropolymers that are covered by CF₃[CF₂]_n-R', where R'=any group, n>16; (iii) perfluoroalkyl carboxylic acids (including their salts, esters, halides and anhydrides) with ≥8 perfluorinated carbons; (iv) perfluoroalkane sulfonic acids and perfluoro phosphonic acids (including their salts, esters, halides and anhydrides) with ≥9 perfluorinated carbons; (v)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PFOS), as listed in this Annex.		2023년 8월 25일까지 위원회에 의해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함. 4. 최대 400 kg의 이온화 방사선 처리 또는 열 분해를 통해 생산된 PTFE 미세 분말 및 해당 PTFE 미세 분말을 포함한 산업 및 전문용 혼합물 및 제품 내에 포함된 PFOA 및 그 염의 농도가 1 mg/kg(중량비 0.0001%) 이하인 경우에 2023년 8월 18일까지 적용함. PTFE 미세 분말의 제조 및 사용 중 PFOA 배출은 완전히 방지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최대한 줄여야 함. 5. 예외 규정에 따라, PFOA(퍼플루오로옥탄산),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이 다음 목적에 대해 허용함. (a) 반도체 제조에서의 포토리소그래피 또는 식각 공정, 2025년 7월 4일까지 허용 (b) 필름에 적용되는 사진 코팅, 2025년 7월 4일까지 허용. (c)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유 및 발수 기능이 있는 섬유, 2025년 12월까지 허용. (d) 침습적(invasive) 및 체내 이식용 의료기기, 2025년 7월 4일까지 허용. (e) 다음 제품 생산을 위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및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VDF) 제조: 2023년 7월 4일까지 (i) 고성능, 내식성 가스 필터 멤브레인, 정수 필터 멤브레인 및 의료용 식물용 멤브레인; (ii) 산업용 폐열교환기 장비; (iii)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PM_{2.5} 미립자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산업용 실란트; 6. 예외 규정에 따라, PFOA(퍼플루오로옥탄산),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이 포함된 소방용 품은 액체 연료 증기 억제 및 액체 연료 화재(Class B 화재)를 위한 목적으로 이미 설치된 시스템(이동식 및 고정식 시스템 포함)에서 2025년 7월 4일까지 사용이 허용된다는 규정.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a) PFOA, 그 염 및/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소방용 품은 훈련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 (b) PFOA, 그 염 및/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소방용 품은 모든 방출이 완전히 통제되는 경우에만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함. (c) 2023년 1월 1일부터, PFOA, 그 염 및/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소방용 품은 모든 방출이 통제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용함 (d) PFOA, 그 염 및/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소방용 품의 재고는 Article 5에 따라 관리해야 함.
--	--	--	--

			7. 예외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perfluorooctyl iodide가 포함된 perfluorooctyl bromide 사용 허용함.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당국에 의해 검토 및 평가되며, 이후 4년마다 검토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8. 2020년 7월 4일 이전에 EU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PFOA, 그 염 및/또는 PFOA 관련 화합물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이 허용된다는 규정. 이와 관련하여 Article 4(2)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항목이 적용됨. 9. 예외 규정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이 2020년 12월 3일까지 허용함. (a) Regulation (EU) 2017/745(8)의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된 이식용이 아닌 의료기기 (b) 라텍스 인쇄 잉크 (c) 플라즈마 나노 코팅
28	Dicofol	115-32-2	
29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and PFHxS-related compounds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and PFHxS-related compounds' means the following: (i)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including any of its branched isomers; (ii) its salts; (iii) PFHxS-related compounds which,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e any substance that contains the chemical moiety C6F13Sas one of its structural elements and that degrades to PFHxS.	355-46-4 and others	1. Article 4(1) (b)항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포함된 PFHxS 혹은 그 염의 농도가 0.025 mg/kg(중량비 0.0000025%) 이하인 경우에 적용함. 2. Article 4(1) (b)항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PFHxS 관련 화합물의 농도 합계가 1 mg/kg(중량비 0.0001%) 이하인 경우에 적용함. 3. Article 4(1) (b)항은 다른 소방용 품 혼합물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소방용 품 농축 혼합물에 포함된 PFHxS, 그 염 및 PFHxS 관련 화합물의 농도가 0.1 mg/kg(중량비 0.00001%) 이하인 경우에 적용함.

30	Dechlorane Plus*	13560-89-9 135821-03-3 135821-74-8	1.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 Dechlorane Plus 의 농도가 10mg/kg (중량 기준 0.001%) 이하인 경우 제4조(1)(b)항이 적용 2. Dechlorane Plus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다음 목적을 위해 허용됨. (a) 항공우주 분야, 2030년 2월 26일까지; (b) 우주 및 방위 분야, 2030년 2월 26일까지; (c) 의료 영상 및 방사선 치료 장치 및 설비, 2030년 2월 26일까지; (d) Dechlorane Plus가 원래 제품 제조에 사용된 다음 용도의 제품에 대한 교체 부품 및 수리. 1) 항공우주 2) 우주; 3) 방위; 4) 육상 자동차; 5) 농업, 임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고정식 산업 기계; 6) 해양, 정원, 임업 및 야외 전력 장비; (1)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테스트, 생산 또는 검사, 다음 중 더 빠른 날짜까지 (a) 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일, 또는 (b) 2044년 12월 31일; (e) Dechlorane Plus가 원래 제품 제조에 사용된 다음 용도의 제품에 대한 교체 부품 및 수리 (i). 의료 기기; (ii). 체외 진단 기기, 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일까지.
31	Methoxychlor, “Methoxychlor” means any possible isomer of dimethoxydiphenyltrichloroethane or any combination thereof.	72-43-5 30667-99-3 76733-77-2 255065-25-9 255065-26-0 59424-81-6 1348358-72-4 and others	Article 4(1) (b)항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포함된 메톡시클로르 (methoxychlor)의 농도가 0.01 mg/kg(중량비 0.000001%) 이하인 경우에 적용함.
32	UV-328	25973-55-1	1.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 UV-328 농도가 10mg/kg(중량 기준 0.001%) 이하인 경우 제4조(1)(b)항이 적용됨. 2. UV-328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다음 목적을 위해 허용됨. (a) 육상 자동차, 2030년 2월 26일까지; (b) 엔지니어링 기계 및 철도 운송 차량용 산업용 코팅 응용 분야, 그리고 대형 철 구조물용 중부하 코팅, 2030년 2월 26일까지; (c) 혈액 수집 튜브의 기계적 분리기, 2030년 2월 26일까지; (d) 편광판의 트리아세틸 셀룰로스(TAC) 필름, 2030년 2월 26일까지; (e) 사진 용지, 2030년 2월 26일까지; (f) 항공우주 및 방위 응용 분야, 2030년 2월 26일까지; (g) UV-328이 원래 다음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경우, 다음 응용 분야의 제품에 대한 교체 부품 물품— (i). 육상 자동차; (ii). 농업, 임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고정식 산업 기계; (iii). 의료 목적이 아닌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시험, 생산 또는 검사를 위한 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 다음 중 빠른 날짜까지 (aa) 물품의 사용 수명 종료일, 또는

			(bb) 2044년 12월 31일; (h)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UV-328이 원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해당 제품의 교체 부품 및 수리는 다음 중 빠른 날짜까지 허용됩니다. (i). 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일, 또는 (ii). 2044년 12월 31일 3. UV-328이 원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의료 목적으로 다음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교체 부품에 대해 UV-328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됨. (i). 의료 및 체외 진단 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 (ii).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테스트, 생산 또는 검사용 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 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일까지
--	--	--	---

표10. 뉴질랜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목록 용도 및 최대 허용 한도

No.	물질명	CAS No.	GADSL #
1	Aldrin	309-00-2	
2	Chlordane	57-74-9	
3	Dieldrin	60-57-1	
4	Endrin	72-20-8	
5	Heptachlor	76-44-8	
6	Hexachlorobenzene	118-74-1	119
7	Mirex	2385-85-5	98
8	Toxaphene	8001-35-2	
9	DDT	50-29-3	
10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110-00-9	
11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	
12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336-36-3 and others	218
13	Alpha hexachlorocyclohexane	319-84-6	
14	Beta hexachlorocyclohexane	319-85-7	
15	BHC (mixture of hexachlorocyclohexanes)	608-73-1	
16	Chlordecone	143-50-0	
17	Hexabromobiphenyl	36355-01-8	215
18	Hexachlorobutadiene (HCBD)	87-68-3	120
19	Hexabromocyclododecane (HBCD)	25637-99-4 and others	70
20	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68631-49-2 and others	216
21	Lindane	58-89-9	121
22	Pentachlorobenzene	608-93-5	167
23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PCP)	87-86-5 131-52-2 27735-64-4 3772-94-9 1825-21-4	169
24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	70706-03-3 and others	219
25	SCCP	85535-84-8 and others	60
26	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s	115-29-7	

		959-98-8 33213-65-9	
27	endosulfan sulfate	1031-07-8	
28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40088-47-9 and others	216
29	Dicofol	115-32-2 10606-49-9	
30	Decabromodiphenyl ether	1163-19-5	216
31	Perfluorooctanoic acid (PFOA) and its salt,	335-67-1 and others	177
32	PFOA-related compounds	376-27-2 and others	178
33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its salts	355-46-4 and others	185
34	PFHxS-related compounds	111393-39-6 and others	186
35	UV-328*	25973-55-1 and others	129
36	Dechlorane plus**	13560-89-9 and others	99
37	Methoxychlor	72-43-5 30667-99-3 76733-77-2 255065-25-9 255065-26-0 59424-81-6 1348358-72-4	

표11. UV-328 국가별 면제조건 비교

구분	스톡홀름협약	유럽	싱가폴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규제도입시 점	2024.2.26	2024.6.5	2024.5/6(금지) 2024.11/12(면제조건)	2025.3.10	2025.3.11	2023.11.30
발효일	2025.2.26	2025.2.26	2025.2.26	2025.3.14	2025.4.1	2025.2.26
유예기간	5년 및 명시된 기간	5년 및 명시된 기간	유예기간 명시 없음	5년 및 명시된 기간	5년 및 명시된 기간	5년 유예기간 없음
생산	금지 ('25.2/26~) 유예: 예외: 생산 및/ 또는 사용 의사를 사 무국에 통지한 당사 자	제품 내 1 mg/kg (0.0001 wt%) 초과 금지 ('25.2/26~)	금지 ('25.2/26~)	금지 ('25.3/14~)	금지 ('25.4/1~)	금지 ('25.2/26~) 유예: 예외: 생산 및/ 또는 사용 의사를 사 무국에 통지한 당사자
사용	특정면제 육상 기반 자동차 (~' 30.2/26) 서비스 부품 금지 적 용시점: 수명종료 or 2044년 중 이른 시 기	특정면제 육상 기반 자동차 (~' 30.2/26) 서비스 부품 금지 적 용시점: 수명종료 or 2044년 중 이른 시기	특정면제 육상 기반 자동차 허용, 5년 유예연급 없음) 서비스 부품 금지 적용 시점: 수명종료	특정면제 육상 기반 자동차 (~'30.2/25) 서비스 부품 금지 적 용시점: 수명종료 or 2043년 중 이른 시 기	특정면제 육상 기반 자동차 (~' 30.2/26) 서비스 부품 금지 적 용시점: 수명종료 or 2044.12/31년 중 이 른 시기	서비스 부품 금지 적 용시점: 수명종료 or 2044년 중 이른 시기

Substance	CAS No.
2-(2H-benzotriazol-2-yl)-4,6-ditertpentylphenol (UV-328)	25973-55-1

* DP (DECHLORANE PLUS) 물질 규제

: 예비부품: 원래 해당 제품의 제조에 Dechlorane Plus가 사용되었고, 제품 서비스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
혹은 2044년 중 도래하는 빠른 시점

(i) 항공우주

(ii) 우주

(iii) 방위 애플리케이션

(iv) 자동차(자동차, 오토바이, 농업 및 건설 차량, 산업용 트럭과 같은 모든 육상 차량을 포함함; 케이블, 와이어 하네스, 커넥터 및 절연 테이
프가 포함됨);

(v) 농업, 임업 및 건설에 사용되는 고정 산업 기계

(vi) 해양, 정원, 임업 및 야외 전원 장비;

(vii)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테스트, 생산 및 검사를 위한 계측기.

Substance	CAS No.
Dechlorane Plus	13560-89-9 135821-03-3 135821-74-8

확정국가 : 싱가포르, 남아공, 뉴질랜드, 영국

확정예정 : EU